

1. 세부 지원내용

<과제 신청 시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1단계(신약후보 물질 발굴 및 비임상 연구지원), 2단계(1단계에서 발굴된 신약 후보물질을 바탕으로 임상 전단계인 IND-enabling 패키지 완성 및 IND 승인 획득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 중 1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1단계 수행을 완료한 과제 중 기술성·사업성 등을 검증한 과제를 대상으로 **단계 평가를 통해 2단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기업(중소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2단계에 진행할 연구개발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 단, 추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이 확정된 과제는 **단계평가 의견 및 2단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등을 반영한 수정연구개발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계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단계 지원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계보고서 및 2단계(R&D) 연구개발계획서는 1단계 종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필수 제출)
- **1단계 수행과제 중 단계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과제만 2단계 계속 지원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목적

- 신약후보물질 연구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해외 유명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약 개발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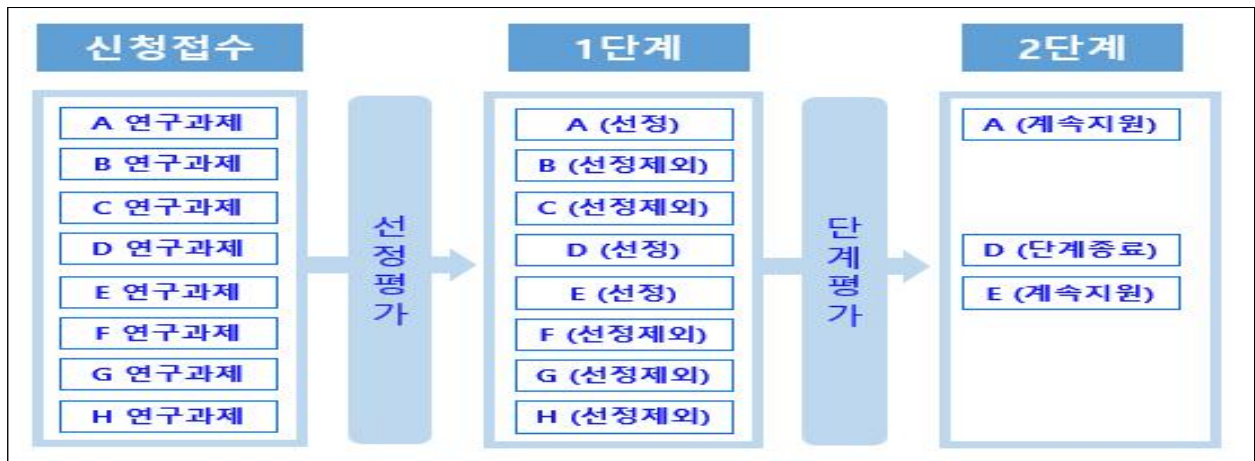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기업이 자율적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과 공동 R&D를 제안한 중소기업 및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연계 과제 지원
 - 국외에 소재한 기업인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과 신약 개발 및 제약 바이오분야 공동연구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자금 지원
 -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에 따른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연계 추천 과제 R&D 연구 지원

- (1단계)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비임상 연구 지원(3년)
- (2단계) 1단계에서 발굴된 신약후보물질을 바탕으로 임상 전 단계인 IND-enabling 패키지 완성 및 IND* 승인획득 지원(2년)

※ 2단계는 1단계 종료 후 단계 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에코브릿지(자유품목) 지원절차>



- **지원규모** : (‘26년) 6.6억원, 4개 과제 내외
 - 자유품목 2개 과제* 내외,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연계 추천 과제* 2개 내외

*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별 선정 과제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신약 후보 물질 등 제약·바이오 분야

□ **지원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국외에 소재한 기업(필수)

* 단, 국내기업의 해외 지사인 경우 협력대상 기관에서 제외

**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국제공동연구 중 '일반형' 유형에 해당(별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제 협약 시 '국제계약서' 및 '변호사 검토의견서' 제출(필수)

**** 과제 신청시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필수)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5년, 25억원 이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에코브릿지(자유품목) 1단계	최대 3년, 15억원 이내	25% 이상
에코브릿지(자유품목)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25% 이상

※ 1단계+2단계 모두 수행시 최대 5년, 25억 이내 지원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총 연구개발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단계	'26.9.1~'26.12.31 (4개월)	'27.1.1~'27.12.31 (12개월)	'28.1.1~'28.12.31 (12개월)	'29.1.1~'29.8.31 (8개월)
2단계	'29.9.1~'29.12.31 (4개월)	'30.1.1~'30.12.31 (12개월)	'31.1.1~'31.8.31 (8개월)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 현금 부담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계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국내기관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단계	1차년도	125	41	166	4.2	37.8	42	208
	2차년도	375	125	500	12.5	81	125	625
	3차년도	375	125	500	12.5	81	125	625
	4차년도	249	85	334	8.3	54	83	417
2단계	1차년도	125	41	166	4.2	37.8	42	208
	2차년도	375	125	500	12.5	81	125	625
	3차년도	249	85	334	8.3	54	83	417

- (지급 기준) 연구개발비 규모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 협약서상 지급 시기별 원화 지급액을 실제 연구개발비 지급일 당시의 환율로 환전하여 외화 지급 원칙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 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실운영비)**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붙임2)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 유지 기기 관련 비용(사무용품은 제외)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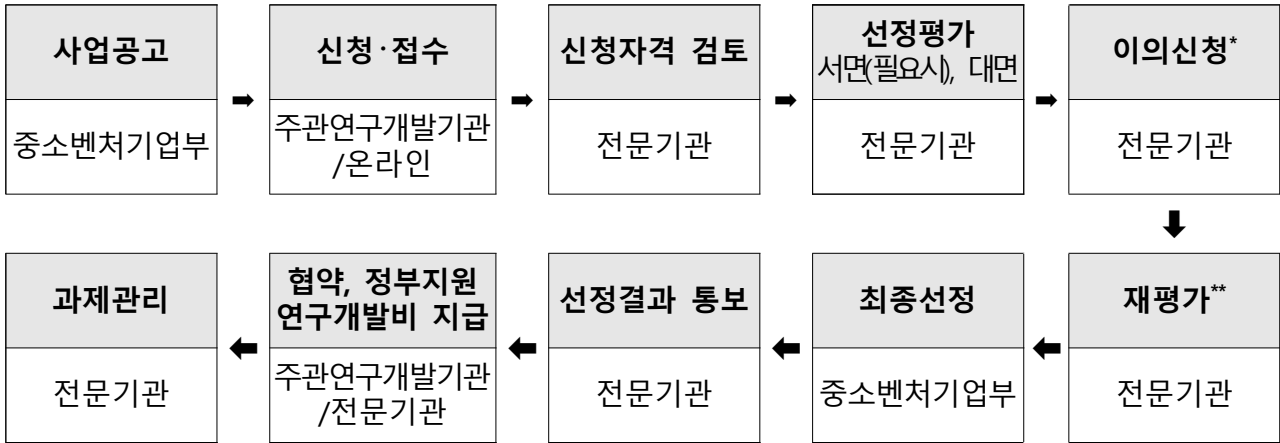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신청자격 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text{서면평가 평점} = \frac{\text{서면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서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40)	·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5
	·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10
사업성 (20)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기술개발역량 (20)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 역량 등)	15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5
파급효과 (15)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자금집행계획(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전략, 기술개발 수행 역량,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선정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대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전략 (30)	· 공동연구 필요성 및 국제협력을 통한 R&D 효과성	15
	· 국외 협력 필수 유형 적합성, 추진체계 적합성, IP 확보 가능성, 인력교류 등 협력 계획 현실성	15
기술개발 수행역량 (15)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10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5
기술성 (30)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10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10
	· 지원단계 별 연구개발 구성의 적합성(1-2단계)	10
사업성 (20)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0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자금집행계획(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수행 역량 주요 평가 항목(안)]

평가항목	주요 내용
연구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기술 관련 연구 장비·설비 등 보유 여부 ■ 시험, 실증 관련 인프라 보유 여부
연구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연구자의 우수성(해당 분야 논문·특허, 관련연구 참여이력 등) ■ 국내 연구자와의 협력 실적 및 성과, 교류·연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
기술사업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국제 특허 보유 현황(국가, 분야별) ■ 기술이전 등 사업화 실적 및 연계 활동 등
글로벌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동연구 실적 및 성과 ■ 글로벌 연계 네트워크, 활동 우수성

□ 지원과제 확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하고, 이의신청 결과 ‘可’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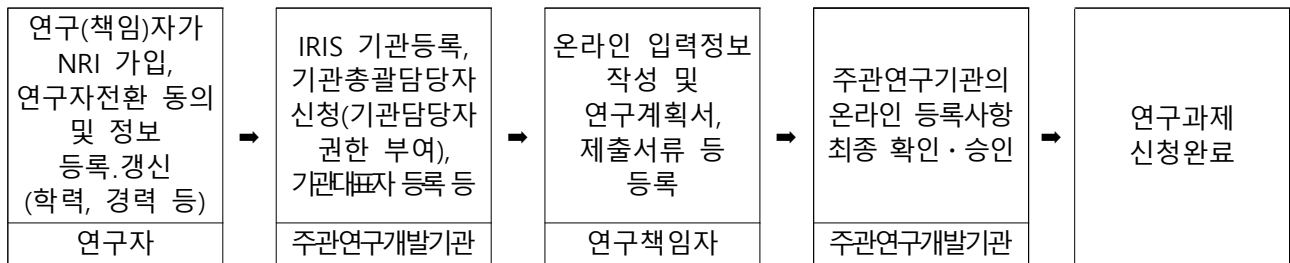
- 선정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 및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필수)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과제 접수기간 : '26년 5월 13일(수) ~ 6월 1일(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그 외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세부과제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필요 서류 제출

< 글로벌협력형R&D 에코브릿지(자유품목) 제출서류 >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②	(영문)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계획서(요약서)	○	
③	(영문)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④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⑤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⑥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용조사보고서 *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 제출		○
⑦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⑩	중소기업 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⑪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⑫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⑬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⑭	국제계약서* 및 '변호사 검토의견서(협약 시 필수 제출 서류) ※ '국제계약서' 및 '변호사 검토의견서' 협약 시까지 제출(선정평가 전 제출 가능)	○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필요 서류 참고사항

②	(영문)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활동계획서(요약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과제명,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명,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개요,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및 수행 범위,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비 사용 계획 등
③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직인 또는 날인 및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또는 날인 必
④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그에 준하는 서류 必
⑥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용조사보고서 •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제출 필수(비영리는 제외) • D&B 신용조사보고서(BIR), KODATA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보고서 등 제출 ※ 부득이하게 신용조사보고서가 발급이 늦어진 경우, 선정평가 시작 전까지 제출 시 인정
⑭	국제계약서 • 주관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원화로 작성

4. 기타사항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아래의 표에 적힌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③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 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산정
-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 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 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국내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권리는 확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필수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유의사항)**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관련 문의 시 검토기간, 시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소요예정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 요망(문의 시 영어 활용)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참고1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 · 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 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 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상장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상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 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 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산업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2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과제 수행 종료 후, 기술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 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 가점 >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 강소+단계' 선정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선정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포함	3점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②	최근 3년 이내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③	「K-유니콘 프로젝트(예비유니콘 특례보증)」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선정)서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⑦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⑧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기업	1점	환경표지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⑩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⑪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우수단계 선정 중소기업	1점	기술보호선도기업지정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⑫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감점 >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